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54 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 김영진 • 박홍배 • 조 국

조인철 · 임호선 · 서삼석

김남희 · 정일영 · 안도걸

황명선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,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.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,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체납사실의 공개)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사실(체납액·압류·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) 등을 관보(공보를 포함한다)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이전에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납사실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.
-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체납사실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, 정보통신망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전설> 제10조의3(체납사실의 공개)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속・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사실(체납액・압류・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) 등을 관보(공보를 포함한다) 및 인사 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명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하다. 다마 시호의 의성으로	현 행	개 정 안
반다. 다한, 지효의 환경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공개 이전에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납사실 공개대 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.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		제10조의3(체납사실의 공개)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속・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사실(체납액・압류・압 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) 등을 관보(공보를 포함한다) 및 인사 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공개 이전에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납사실 공개대 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하며, 통지일로부 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.

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체납사실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, 정보통신망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